

판 결

사 건
원 고

가입비반환

피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

조효동

변 론 종 결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